

## 제2차 대전시 소련의 한인 노무인력 동원정책\*

沈 憲 用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1. 서 론
2. 소련 국가 형성기 노무동원 정책
3. 전시 적성국 노무인력 동원과 노무부대
4. 전후 특별위수사령부의 통제와 한인
5. 결 론

### 1. 서 론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로 戰時나 危機 時에는 군과 같은 무장조직이 일차적으로 대처하게 하면서 추가적으로 사회 民間分野의 物的資源(material resources)과 人的資源(human resources)을 총동원하여 전력 극대화에

\* 본 연구는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러시아역사연구소의 고문서 연구분야의 대가인 부카이 (Н. Ф. Букай) 교수와 젤스코프(В. Н. Земсков) 박사의 연구조언과 자료제공에 큰 힘을 얻었다.

노력하였다. 이같이 국가차원에서 사회적 자원을 動員하는 政策이 추진되어 온 이유는 현대적 의미의 위기란, 일단 발생했다 하면 곧바로 전후방이 없는 총력전으로 그 양상이 발전하기 때문이다. 動員(mobilization)이란 “전시 또는 국가 비상시에 있어서 현역 군사복무를 시키기 위하여 兵員, 물자 및 장비를 집결 편성하여 평시체제로부터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전시에 필요한 인원, 마필, 재료 등을 증족, 정비하여 그 편성, 장비, 집결이 완료되어서 즉시 작전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경우를 動員完結이라 한다.”<sup>1)</sup> 즉 전시를 포함한 “비상상태 하에서 국방상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수용하거나 또는 사용 및 통제, 운용하는 행위”<sup>2)</sup>라고 광의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국가 비상상태 및 전쟁에 動員되는 인적, 물적자원은 그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는데 군 조직에 직접 병력으로 혹은 군 시설 작업에 참여하는 형태를 취하거나, 또는 後方地域의 산업현장, 즉 도로, 항만 등 사회 인프라 건설(시설동원), 군수물자의 생산현장(산업동원)이나 보급물자 수송(수송동원) 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동원되었다.<sup>3)</sup> 후자의 경우처럼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적자원은 군사조직에 민간인 신분으로 편성되어 전력의 극대화에 활용된 勞務人力들이었다.

이들 노무인력들은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를 계약이나 직접 고용의 형태를 통해 보상받거나 혹은 강제적으로 동원되어 아무런 보상도 없이 노동력만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계약을 통한 대가를 비록 받았다 하더라도, 대개의 경우, 그 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자원에 대한 동원은 그 방식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는 경우

1) 芮瑄壽 편, 『軍事學大辭典』(서울: 세문사, 1964), p. 326.

2) 김광석, 『用兵述語研究』(고양: 병학사, 1998), pp. 201~202.

3) 동원은 그 동원되는 형태에 따라서도 정상동원과 긴급동원의 두 가지로 나뉘기도 한다. 동원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김광석, 위의글; Woodford A. Heflin(ed.), The United States Air Force Dictionary (Air University Press, 1956), p. 330.

는 그리 많지 않았다.<sup>4)</sup> 결국 동원이란 조치는 비록 합법적인 근거와 형태를 갖추었을 지라도 非常 時局이라는 상황에 의해 強制的인 性格을 띠 수 밖에 없다.

노무자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戰鬪勤務를 충실히 支援함으로써 군의 전투 병력이 행정이나 그 밖의 근무지원에 투입되지 않고 전투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전쟁 진행과정에 노무자들이 수행한 역할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실례로 한국전쟁 시기 이들 민간 노무인력들이 전쟁 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음은 실로 고무적이다.<sup>5)</sup> 어찌보면 노무자들은 후방의 군수산업이나 일반 생산현장에서 동원되어 노동력을 무기로 전쟁에 기여한 셈이다. 이처럼 한국전쟁을 비롯한 현대전에서 인력동원이란 전쟁 국면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되었다. 그러나 동원된 노무부대가 보여준 활약상은 그 의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되지 않았다. 전쟁사의 주요 쟁점은 전쟁의 수행과정과 그 결과에 대

4) 한국전쟁 초기 학도병과 같이 자원하여 전선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병력의 징, 소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낙동강 선까지 밀린 한국군은 전쟁초기의 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되자 필요한 병력의 보충을 각 부대별로 실시하지 않고 육군본부 가 법에 의해 필요한 병력을 정상적인 방식으로 충원하려 했으나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거리나 가택을 방문하여 강제적인 방식으로 병력에 대한 징집과 소집이 이루어졌다. 申英鎭, 『韓國戰爭時 動員研究』, 『占領政策·勞務運用·動員』(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 247. 이러한 상황은 식민지 국가에서 벌어진 병력동원이 강제성을 띠었음을 당연스럽게 설명해 준다. 김도형, 『일제의 한국인 병력동원체제』, 『군사사연구총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2집, 2002, pp. 77~139.

5) 한국전 당시 국군과 유엔군이 활용한 노무자들의 역할에 대하여 “어떤 의미에서는 전투의 절반을 그들이 치렀다”라고 당시 전투 지휘관들이 높게 평가한 점은 새겨들을 만 하다. 노무자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戰鬪勤務支援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군의 전투 병력이 행정이나 그 밖의 근무지원에 투입되지 않고 전투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 중요한 의의가 있었다. 박기병 대령, 김응조 대령 증언, 국방군사연구소 증언록; UNITED STATES ARMY KOREA SERVICE CORPS, KSC-INTRODUCTORY HANDBOOK, 1990, p. 4. 양영조, “한국전쟁시 노무운용 연구”, 『占領政策·勞務運用·動員』, p. 136. 재인용. 그리고 일제에 의해 동원된 한인군속의 경우, 전쟁터에서 희생된 군인보다 민간노무자로 활동하다가 희생당한 사람들이 더 많았을 정도로 그 역할은 컸다고 판단된다.

한 문제에 집중되었지, 노동력을 무기 삼아 전쟁을 수행한 민간 노무자들의 활동과 그 영향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sup>6)</sup> 게다가 민간 노무자들이 직접적으로 전투력에 끼친 역할 그리고 그 이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민군협조, 민간인 피해와 인권문제, (피)난민 문제, 산업시설의 운용문제 등)들에 대한 인식부족 역시 이 분야 연구에 무관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소련이 전쟁과 전쟁 전후시기에 보여준 민간인 노무인력 동원정책 사례를 규명해 봄으로써 우리의 전쟁사 연구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소련 정부는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무인력 동원정책을 광범위하게 실시하였다. 그 동안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소련의 붕괴와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과거 ‘극비’ 인장이 찍혀있던 문서들이 공개되면서 크게 진척되어 왔다.<sup>7)</sup> 이에 따라 엄청난 인명과 재산, 즉 사회적 인

6) 한국전쟁 기간 중 군사작전을 지원한 민간인 노무조직은 군사조직의 편제에 속한 國民防衛軍(1950년 12월 21일 창설)이나 韓國勞務團(1951년 6월 창설) 등이 존재한다. 이외에도 保國隊 명칭의 조직에 참여한 노무자나 UN군에 직고용되거나 계약에 의해 근무한 계약노무자 그리고 북한의 後方復舊部隊 등의 사례가 있다. 이들에 대한 흔치않은 다음의 연구 결과들은 이 분야에 선구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 김병곤, “한국전쟁기간 중 한국노무단에 대하여”, 國防部編纂委, 『軍史』 제23호, 1991, pp. 225~257; 양영조, “한국전쟁시 노무동원과 운영에 관한 연구”, 國防部編纂委, 『軍史』 제29호, 1994, pp. 125~157; 남정욱, “국민방위군”,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pp. 139~251.

7) В. Н. Земсков, “Спецпоселенцы(по документации НКВД - МВД СССР)(특별이주자(소련 내무인민위원회-내무부 자료에 따라)),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No. 11. 1990. с. 3-17; Он же, “ГУЛАГ(Историко-социологический аспект)(교정노동수용소(역사-사회학적 측면)),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No. 6. 1991. с. 10-26, No. 7. 1991. с. 3-16; Он же, “Заклоченные, спецпоселенцы, ссыльные, выклянные(Статистическо-географический аспект)(수형인, 특별이주자, 유형이주자, 유형자 그리고 추방자(통계-지리학적 측면)), История СССР, No. 5, 1991. с. 151-165; А. И. Кокурин, “Спецпоселенцы в СССР в 1944 году или год большого переселения(1944년 혹은 대이주의 해. 소련에서의 특별이주자)”. Отечественные архивы(조국의 문서보관서). N 5. M., 1993; Н. Ф. Бугай, “Мобилизовать немцев в рабочие колонны... И Сталин”,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1940-е годы.(“독일인을 노무부대로 동원하라... 스탈린”(1940년대 문헌집)(M.: Го

적, 물질 자원의 손실을 가져온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소련 정부가 전후방의 모든 전선에서 민간인을 노무부대의 노무자로 동원했던 역사적 흔적들이 많이 밝혀졌다. 전시체제의 소련은 노무부대를 군 조직의 일부로 편성하여 전선에서의 직접적인 전투근무 지원과 더불어 후방의 산업현장에 노동력으로 투입하여 제2의 전쟁을 치루었다.

소련은 내무인민위원회 산하에 특별이주자 운영국을 두어 적성국 민족이나 사회 불순세력을 수용소에 가두고 노역을 강요하였다. 노역을 위해 편성된 근로대 등의 노무조직은 전쟁이 터지자 곧바로 勞務部隊(Трудовая армия 또는 трудармия)로 재편되어 강제 이주되고 강제 동원된 特別移住者(спецпереселенцы)를 엄격한 통제 속에 두고 노동력을 제공토록 하였다. 전시 소련의 이러한 동원정책은 군복무 중에 있는 자들 조차도 동원 해제시켜 이들이 소비에트 조국을 위해 총을 잡을 기회를 박탈하여 전선이 아닌 후방의 노동현장에서 고역에 시달리도록 내몰았다. 스탈린은 多民族으로 형성된 赤軍이 파시스트 세력에 맞서 통일된 군사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러시아 애국주의'를 호소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적성국 국가의 민족이나 적대국에 부역한 민족들을 군대조직에 동원하지 않고 후방 지역의 노무부대에 강제 동원시키기도 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소련은 노무부대를 조직을 통하여 민간 노무인력을 노동현장에 강제로 동원시켜 국가방위능력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한 것이다.

본 연구는, 전시 소련의 노무동원 정책이 전쟁 이전 국가, 사회관리 시스템이 형성되면서 '프롤레타리아트 강제성'론이 갖는 강압성을 처벌 내지 탄압기구에 그대로 적용하는 등 전쟁 이전에 이미 이론, 정책적 합법성을 지닌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러한 사상이 국가정책에 어떻

тика, 1998); Он же, Социальная натурализация и этническая мобилизация(Опыт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и)(사회적 귀화와 종족 동원(러시아한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M.: ИЭА РАН, 1998); А. А. Герман, А. Н. Курочкин, Немцы СССР в "Трудовой армии"(1941-1945)("노무부대"의 소련 독일인(1941-1945))(M.: Готика, 2000).

게 반영되었는 지, 그리고 그러한 정책을 담당한 강제기구는 어떻게 구성되었는 지에 대한 배경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941년 전쟁이 발발하자 내무인민위원회-교정노동수용소로 이어지는 특별이주민 억압기구는 곧바로 노무부대를 편성하여 노동력을 무기로 산업현장에서 전쟁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쟁기 소련의 노무인력 동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소수민족 韓人에 대한 동원과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소련 국가 형성기 노무동원 정책

### (1) '프롤레타리아트 강제성'론의 이론과 실제

#### 1) '프롤레타리아트 강제성'론

'프롤레타리아트 강제성'이란 사상은 볼셰비키 혁명과 신 소비에트 국가의 건설과정에서 볼셰비키 당지도자들이 이론적으로 발전시켰고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구현되었다.<sup>8)</sup> 볼셰비키는 짜르 전제권력을 타파하고 새로운 국가를 사회주의적 형태로 건설하면서 새로운 사회질서에 반대하는 구지배계급을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사회적 노동의무를 폭넓게 부여하였다. 이러한 입장을 적극 옹호한 대표적인 볼셰비키는 소련 적군의 창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트로츠키(Л. Троцкий)였다. 그는 1918년 12월, 무조건적이고 가차 없는 구지배계급에 대한 테러야말로 노동자들이 새로운 사회질서를 신속히

8) 사회주의 혁명과 그 이후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수단으로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勞動義務를 부여하고 토지경작(농업)을 위한 勞動 軍隊(또는 勞動軍)(Трудовая армия: 이하 소련의 민간인력 동원정책의 실현과정에서 사용되는 의미에서 勞務部隊과 칭한다)의 창설을 제안한 바 있다.

만들 시간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불가피한 수단이라 하였다. 이러한 입장의 실현을 위해 그는 제9차 볼셰비키 당대회에서 노동자 농민을 動員軍으로 편성할 수 있는 軍國主義化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하였다.<sup>9)</sup>

이를 개념적으로 더 명확히 한 볼셰비키는 부하린(Н. И. Бухарин)이었다. 그는 1920년에 “프롤레타리아트 強制性이 자본주의 시기의 인적 자원을 자연스럽게 共產主義的 人間型으로 완성시키는, 체제전환 시기에 銃殺에서부터 勞動義務에 이르기까지 不可避하게 실시될 手段”이라고 하였다.<sup>10)</sup> 즉 총살로 은유된 국가의 물리적 폭력으로 시민의 일반적 노동의무를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에 동원시키도록 한 것이다.

그후 공산주의적 인간형인 ‘소비에트 국민(советский народ)’에 대하여 노동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에 있어서 강제적 수단이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은 국가권력을 장악한 스탈린의 이론적 해석과 정책 수행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정치적 권위에 의해 일반화되었다. 특히 1920년대 중, 후반 부농계급을 퇴치하고 농업집산화와 공업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의 입장은 더욱 강화되고 현실화되었다. 1929년 12월 27일 마르크스주의 농업종사자 회의에서 스탈린은 “부농을 점령해야 한다. 이것은 사업을 준비하고 부농을 때려잡는 것을 의미하지만 부농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우리들 볼셰비키 사이에서는 진정한 점령으로 불리워진다”<sup>11)</sup>며 부농에 대한 계급투쟁 과정에서 실시되는 (국가의 강제적) 폭력을 정당화했다.

9) “군사영역에서는 병사들에게 의무를 다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 합당한 기구가 존재한다. 이것은 어떤 형태라 할지라도 노동의 영역에서도 존재해야 한다…… 그것은 시급히 검토되어야 하고, 정확히 말하면 병사들처럼 지휘되어야 한다.” Девятый съезд РКП(б)(러시아공산당(불) 제9차 당대회), (M.; 1960), c. 93.

10) Н. И. Бухарин, Проблемы теории и практики социализма(사회주의의 이론과 실제의 문제점), (M.; 1989), c. 168.

11) И. В. Сталин, Сочинения(전집), T. 12, c. 164 167.

## 2) 전쟁 이전 ‘프롤레타리아트 강제성’론의 실제

소비에트 국가가 건설되어 가면서 새로이 형성된 사회질서에 불만을 토로하거나 적대적으로 대항하는 세력은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이미 1918년 9월 내전이 한창일 당시 인민위원회(Совнарком)가 발표한 “赤색테러에 대하여(О красном терроре)”라는 법령은 범죄자들을 타도하여 후방의 안정을 도모함에 있어서 赤색테러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항임을 강조하였다.<sup>12)</sup> 일차적으로 소비에트 정부에 반대하는 백군 내지 까자크 집단(казачество) 등의 반혁명 세력들이 혹독한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테러의 활용은 곧 ‘프롤레타리아트 강제성’이란 논리에 따라 그 정당성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1920년대 전반기까지는 사회적, 민족적 원인을 이유로 일반 국민을 이주시키거나 노동의무를 강제적으로 부여하는 등의 강압적 테러 조치가 폭넓게 취해진 것은 아니었다. 주민 일부에 대한 이주 조치들은 순전히 우연적인 성격을 띠었다. 강제 노역을 통하여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동원정책이 사회주의 경제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그리 중요시 되지도 않았다.

1920년대 후반 국가 계획 하에 농업집산화(коллективизация)와 공업화(индустриализация) 정책이 추진되면서 사회 정치적 상황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일부 부농(кулаг)에 집중된 토지를 무산자 계급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해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부농분자들을 대대적으로 정리(раскулачивание)하게 된다. 특히 이들 적대계급 지지자들은 소련의 전역에서 준동하고 있는 반소비에트 폭도 집단에 영향을 주고 있어 적극 청산될 필요가 있었다. 이들은 특별이주민으로 분류되어 추방되었으며 황무지나 다름없는 지역의 개간에 노동이주자들로 동원되었다. 부농 이외에도 교회 등 종교 집단의 열성 회원, 모든 종류의 분리주의 집단과 그러한 공동체, 투기꾼, 귀족과 대지주 등 적대적이고 ‘불순한’ 세력들이 농업집산화가 시행되는 지역

12) “О красном терроре”, Сборник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и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о репрессиях и реабилитации жертв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적색테러에 대하여”, 탄압과 정치탄압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법규모음집), (M., : Республика, 1993), с. 11.

과 국경지대(특히 우크라이나 서부지역, 북카프카즈 지역<sup>13)</sup> 그리고 시베리아 극동) 등 소련의 그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멀리 내륙으로 이주되었다.

193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소련 동서 국경지역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새로운 제국주의 전쟁의 가능성을 두고 점차 긴장이 고조되어 갔다. 유럽에서는 스페인 내전이 발생하고 극우 프랑크 정부가 들어섰으며, 극동지역에서는 일본 관동군이 조선인과 중국인의 갈등을 조장해 만주침략을 노골화하더니 1932년 滿洲國을 세워 소련과 국경을 맞대게 되었다. 1936년 일본은 “帝國國防指針”을 개정하여 소련과 미국을 제1의 假想敵으로 삼았고 군비확장에 박차를 가했으며, 1936년 11월에는 日獨防共協定을 맺어 대소련 반공정책을 가시화했다.

소련 정부는 예상되는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우려 속에서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억압(대테러)과 반대파 숙청을,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국경지대에 존재하는 적대국의 ‘第5列’을 차단할 목적으로 국경주민 내지 적성국 민족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이주를 실시한다. 전쟁 전에는 국경의 안전을 위해 ‘豫防的’ 차원에서, 국경에 주로 밀집해 거주하는 적성국 민족들을 강제이주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이 착착 진행되었다.<sup>14)</sup> 1936년 4월 우크라이나와 백러시아 등 소련의 서부 국경지대에서 800km 이내에 거주하던 주민들 35,820명이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되었으며, 1937년 7월에는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각국 정부의 국경지역을 特別禁止

13) 북카프카즈와 다게스탄 지역의 농업집산화 과정에서도 정부 정책에 반하는 집단을 순차적으로 이주, 격리시키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일차적으로 2만명의 농업인구가 1930년 2월 10일까지 이주될 운명에 처해졌고, 그 후 그 수치는 23,000명까지 증가되었다. 이들은 강제이주 계획에 따라 우랄 후방으로 보내졌다. A. M. Гонов, Северный Кавказ: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русского этноса(20-30-е годы)(북카프카즈: 1920-30년대 러시아 종족의 실질적인 문제)(Ростов на Дону; 1997), с. 78.

14) 심현용, “강제이주 발생 메카니즘과 민족관계의 특성 연구”, 『국제정치논총』, 한국국제정치학회, 제39집 3호, 1999, pp. 206~210; I. Kreindler, “The Soviet Deported Nationalities: A Summary and Update”, Soviet Studies, July, No.3, 1986, pp. 390~392.

區域으로 설정하여 그곳에 거주하던 주민, 특히 꾸르드족 1,325명이 중앙아시아 내륙으로 강제이송 되었다. 1937년 후반기에는 지방 권력기관들, 특히 극동주 내무인민위원회 운영국(УНКВД)으로부터 “트로츠키-일본 스파이 해악 활동과” “반혁명적 선동과 파괴 행위”가 전례없이 급증한 사실을 알리는 편지와 보고, 신청서들이 증가했다. 이에 대한 중앙정부기관의 회신에서는 “어떻게 사회주의의 적들과 스파이들의 해악 행위를 제거할 것인가에 대한 지시와 훈령이 계속해서 떨어졌다”.<sup>15)</sup> 그리고 1937년 8월 소련의 극동지역을 배경으로 또 한차례의 강제이주가 실시되었다. 이로써 연해주를 위시한 극동지역 한인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한 이주 대책은 모든 한인을 추방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내무인민위원장 예조프(Н. Е. Ежов)는 1937년 10월 25일 소련방 인민위원회 위원장인 몰로토프(В. М. Молотов)에게 보낸 서신에서 최종 총괄적 내용을 담은 자료를 보냈다. 여기에 그는 “124대의 차량에 한인 총 171,781명이 이주되었고 나머지 잔류 한인은 1937년 11월 1일까지 소거될 것이다”<sup>16)</sup>라고 보고하였다.

예상되던 전쟁은 獨蘇不可侵條約이 비밀리에 체결되었기에 설마했던 서부전선에서 먼저 발생하였다. 전쟁이 터지자 스탈린은 우선적으로 불가강 유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독일계 러시아 주민 800,000명을 중앙아시아나 시베리아로 추방하였다. 그리곤 1942년 1월 118,000명의 독일인을 노무부대의 일종은 노동부대 내지 근로대 형식으로 특별이주시켜 강제노역에 시달리게 하였다. 더욱이 히틀러가 장악한 지역, 특히 북카프카즈 지역이나 러시아 남부지역의 민족들, 즉 칼미끼, 체첸잉구쉬, 까바르진, 끄림 따따르 민족 등등을 파시스트를 도와 조국을 배신한 혐의로 재판에 부쳐 강제이주란 처벌을 가했다.<sup>17)</sup>

15)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러시아연방 국립문서보관소 이하 ГАРФ), Ф. Р. - 9401. Оп. 2. Д. 135. Л. 43 ; Ф. Р. - 5446. Оп. 29. Д. 48. Л. 17.

16) Белая книга. О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и в 30-40х годах.(1930-40년대 러시아 한인 강제이주 백서) Часть 1.(M., ; 1992), с. 136.

17) 심현용, 앞의글, pp. 212~214.

치열한 계급투쟁과 내전의 조건에서 불가피하게 활용되었던 강압적 조치들은 국가의 정상화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대체되어야 했다. 그러나 소비에트 정권 확립의 방식으로 취해진 강제적 조치들에 대한 대안이 개발되지 못하고 그대로 이용된 이후, 억압적 성격의 정책 수단들은 지속적으로, 마치 ‘傳家の 寶刀’처럼 활용되었다. 그리고 전쟁이란 비상 사태를 이유로 더욱 합리화되고 조건지워져 만성적인 강제이주와 강제노동정책을 실시하였다. 전쟁 직전과 직후 그리고 전쟁 기간에 적들에게 이롭게 보이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작동되기 시작한 무덤덤한 기계동작만큼이나 자동적으로 실행되었다.

## (2) 실행기구: 내무인민위원회 - 矯正勞動收容所(ГУЛАГ)

전쟁 발발 이전에 이미 산업현장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역에 종사하고 있었다. 국가권력기관으로서 주민집단에게 강압적 조치를 실시한 주무부서는 내무인민위원회(НКВД)였다. 내무인민위원회의 기본업무는 내무행정 이외에도 재산몰수, 징발, 세금부과, 징병기피자나 노동의무 회피자 색출, 행정조정, 국법에 따라 주민들이 행할 병역, 농산물 징발, 노동의무의 완수토록 보장<sup>18)</sup>하는 개별업무에도 집중되어 있었다. 내무인민위원회는 정책수행을 위한 강압적 물리력을 과거 부르쥬아지 집단이나 부농 그리고 까자크집단 등 새로운 사회질서를 거부하는 세력들을 교화시키거나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내무인민위원회는 특수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범죄자 내지 불순분자에 대한 교화와 처벌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었다. 그러한 조치는 수감시설의 활용과 같은 물리적 억압 수단의 강화에도 취해졌다.

18) E. Г. Гимпельсон, Формирование советск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1917-1923 гг. (1917-1923년 소비에트 정치 체제의 형성), (M., ; 1995), с. 86.

1919년 5월 12일, 全露중앙집행위원회 상임위원회(Президиум ВЦИК)는 “矯正收容所 설치 규정(Инструкция о создании концентрационных лагерей в каждом губернском городе)”을 채택하였고 5월 17일에는 “강제노역을 위한 수용소에 대하여(О лагерях принудительных работ)”를 제정하여 처벌대상을 수용할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과 운용규칙 등을 제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내무인민위원회는 자신들의 기구 산하에 국가의 강제기능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수용소를 갖추기 시작하였다.<sup>19)</sup>

처음에 4군데만 세워졌던 수용소는 1919년 말에 이르러 21개로 늘더니 1921년에는 122개로 증대되었다. 이같은 증설은 곧 수용인원의 증대에 따른 것인데, 애초에 300명 규모로 계획된 수용소는 점차 그 규모가 커져 1920년 초에는 약 16,000명의 수용규모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1920년 말에는 25,236명으로 수용규모가 급증하였다.<sup>20)</sup> 결국 갑자기 확대된 수용소 조직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기구가 필요하게 되어 強制勞動收容所 運營局(Отдел по управлению лагерями принудительных работ)이 내무인민위원회 산하에 정식으로 구성되었다. 비로소 내무인민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수용소가 본격적으로 노동교정수용소로 바뀌어 단순한 수감 형태로 마무리되었던 기존의 처벌방식에 강제노역을 추가하여 관리하기 시작했다.

수용소 체제는 1920년대 후반에 근본적으로 변모하게 된다. 1928년 4월, “교도소 체제를 합동국가보안부가 관리하는 특수 수용소 체제”로 바꾸자는 논의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Политбюро РКП(б))에 의해 받아들여져, 기존의

19) 최초의 수용소는 1918년 8월 “선동가, 반혁명 분자, 파업자, 무위도식자, 투기꾼”을 수용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이를 합법화한 법률이, 앞서 언급했듯이, 1918년 9월 5일에 채택된 인민위원회의 “적색 테러에 대하여”였다. В. С. Лельчук, Е. И. Пивовар(ред.), “ГУЛАГ в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 политической жизни страны(러시아의 정치, 경제적 생활의 관점에서 본 교정 노동수용소)”, СССР и холодная война(소련과 냉전)(М.: Мосгорархив, 1995), с. 203-204.

20) Е. Г. Гимпельсон, *op. cit.*, с. 87. 김펠손의 분석대로 당시 수용된 사람들은 농민이 66%, 종교인 21%, 귀족 6% 그리고 기타 7%의 사회적 구성을 이루고 있었으며 반혁명 분자 혐의자가 27%, 탈영(탈주, 이탈)자가 17%를 이루었다. 실로 다양한 계급, 계층의 사람들이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용소를 더욱 확대하면 원거리 지역의 개척, 개간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그 기능이 확대된 기구로 만들자는 계획안으로 확정되었다. 이 계획안은 마침내, 1929년 11월 26일 소련 중앙집행위원회(ВЦИК СССР)와 인민위원회(СНК)가 1924년에 제정된 형사법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소비에트 국민에 대한 노동의무를 법률화시킴으로서, 형사법적 처벌의 한 형태로 강제노역을 수용소 체제의 일부로 공식 등장시키게 된다. 1930년에는 “矯正勞動收容所에 대한 규정(Положение об Исправительно-трудовых лагерях)”이 제정되어 기구 운용규칙이 갖춰지고 그 총괄기관으로서 교정노동수용소 본부(Гла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исправительно-трудовых лагерей 이하 ГУЛАГ)가 설치됨으로서 비로소 수용소 체제는 법적 제도적 틀을 완벽히 갖추게 된다.

교정노동수용소 조직은 1930년대부터 일반화되기 시작한 富農에 대한 계급투쟁과 敵性國 소수민족 그리고 민족주의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어 갔다. 소련사회 내에 소비에트적 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指導者の 意志”대로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것이 사회의 어느 주민집단이건, 그리고 그것이 어느 민족이건 간에 상관없이 모든 의심되는 사람들은 “人民의 敵”, “階級の 敵”으로 낙인찍혀 노동을 위한 통한 교정의 대상이 되었다. 소비에트 정부의 정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긴장과 민족갈등의 문제들이 조정되고 통제되는 수단이었던 특별 조치들이, 점차 관행적으로 받아들여지더니, 중국에는 억압과 강제노동의 성격을 갖는 비민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게 되었다.

전쟁 이전에 활용된 처벌 방식에 있어서도 다양한 발전이 있게 된다. 개인에 대한 流刑(일정한 기간 동안의 추방)이나 特別流刑(영원한 추방)에서부터 민족집단 내지 사회집단에 대한 강제이주, 행정구역 폐지, 정치적 자치기구의 폐지 등 그 다양한 처벌방식이 민족적 차이나 사회집단간의 차이 혹은 그 규모에 있어서의 대소를 구분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적용되었다.<sup>21)</sup>

21) А. С. Хунагов, Депортация народов с территории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и Ставрополья /20-е-50-е годы/(Ирландия-2000년) 변경주와 스타브로폴 지역 민족들의 강제이주(1920년대에서 50년대까지). ДКИ. 1997, М., с. 55.

&lt;표 1&gt; 제2차세계대전 전후 교정노동수용소(ГУЛАГ) 수감자 인원수와 민족구성

연도 민족구성	1939	1940	1941	1951
러시아인	830,491	820,089	884,574	1,405,511
우크라이나인	181,905	196,283	189,146	506,221
백러시아인	44,785	49,743	52,064	96,471
그루지아인	11,723	12,099	11,109	23,583
아르메니아인	11,064	10,755	11,302	26,764
아제르바이잔인	-	10,800	9,996	23,704
카자흐인	17,123	20,166	19,185	25,906
투르크메니아인	9,352	9,411	9,689	5,343
우즈베크인	24,499	26,888	23,154	30,029
타지크인	4,347	5,377	4,805	5,726
키르기즈인	2,503	2,688	2,726	6,424
타타르인	24,894	28,232	28,542	56,928
비쉬키르인	4,874	5,380	5,560	7,847
부랴트인	1,581	2,700	1,937	-
유대인	19,758	21,510	31,132	25,425
독일인	18,572	18,822	19,120	32,269
폴란드인	16,860	16,133	29,457	23,527
핀인	2,371	2,750	2,614	4,294
리투아니아인	4,742	5,400	4,870	28,520
리투아니아인	1,050	1,344	1,245	43,016
에스토니아인	2,371	2,720	2,781	24,618
루마니아인	395	270	329	1,639
이란인	-	134	1,107	606
아프가니스탄인	263	280	310	131
몽골인	35	70	58	83
중국인	3,161	4,033	3,025	2,039
일본인	50	80	119	1,102
한인	2,371	2,800	2,108	2,512
몰도바인	-	-	-	22,725
우드무르뜨인	-	-	-	5,465
그리스인	-	-	-	2,326
투르크인	-	-	-	362
기타 민족	76,055	67,451	148,460	87,030
총계	1,317,195	1,344,408	1,500,524	2,528,146

출처: В. Н. Земсков, "ГУЛАГ(историко-социологический аспект)", (교정노동수용소(역사-사회학적 측면)),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No. 6. 1991, с. 17; No. 7. 1991, с. 8.(필자 일부조정.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

제2차 世界大戰의 前夜에 일반화된 강제동원과 노역 부과 조치는 戰時를 맞아 자동적인 처벌 내지 동원형태로 작동되었다. 그 대상에 있어서 구분은 없었으나, 특히 불순한 적성국 민족이나 사회집단 등 파시스트 독일이나 일본에 협조한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이 훨씬 강화되었다.

1940년에 이르면 교정노동수용소본부(ГУЛАГ)는 수천개의 收容所 支部와 據點, 425개의 産業, 農業, 契約 地帶(промышленная, хозяйственная и контрогентская колонии), 50여개의 未成年 地帶 그리고 90개의 幼兒施設을 갖춘 거대 기관으로 성장하게 된다.<sup>22)</sup> 교정노동수용소에 수용된 인원은 설사 없이 대규모 유입되어 제2차 세계대전이 경과하면서 이곳을 거쳐간 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표 1> 참조). 소련 정부는 전쟁을 대비하여 미리 수용소 규모를 확충한 것은 아니지만 언제라도 전쟁 상황에 동원시킬 수 있는 노무인력을 확보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셈이 되었다.<sup>23)</sup>

### 3. 전시 적성국 노무인력 동원과 노무부대

#### (1) 전시 동원체제하의 특별이주자 관리기구와 '노무부대'의 편성

1930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제국주의 세계전쟁에 대한 가능성이 깊어진다

22) СССР и холодная война(소련과 냉전), Op. cit., с. 212. 또다른 기록에 의하면 1940년 3월 수용소가 53개 설치된 것을 비롯해, 농업근로대가 83개, 산업근로대가 170개 그리고 미성년 근로대 등의 교정근로대가 50여 개가 있었다 한다.

23) 전시 교정노동수용소를 거쳐간 사람은 230만에 이르며 이중 8%는 노동자와 근로자들이었다. Е. М. Мальшева, Социальные отношения и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рабочих и крестьян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제2차 세계대전 시기 북카프카즈 노동자와 농민의 사회적 관계와 경제적 협력).(M., 1993), С. 62.

고 인식한 소비에트 정부는 엄격한 사회경제 정책을 취하는 한편 국내의 적대세력을 처벌한 후 강제노역 시키는 방식으로 사회적 인적자원을 동원하는데 열중하였다. 193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 동원된 인적자원을 교정노동수용소에서 '특별이주자(спецпереселенцы)'(혹은 특별주거자(спецпоселенцы), 노동거주자(трудпоселенцы)) 신분의 수감자로 강제로 노역시켰던 담당 관리기관은 그 수용규모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업무의 소관부처가 달라지면서 그 부서의 명칭 또한 바뀌게 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1931-1934 년간에 특별이주자들의 노역을 관리하던 부서는 보안기관인 國家合同保安部(ОГПУ) 산하 교정노동收容所 특별이주자국(Отдел по спецпереселенцам ГУЛАГа)이었다. 그러나 1934-1940년에는 특별이주자들에 대한 관리가 국가합동보안부라는 보안기관에서 내무인민위원회 교정노동수용소 산하 勞動移住局(Отдел трудовых поселений ГУЛАГа НКВД СССР)으로 넘어가 통합관리된다. 그 후 줄곧 내무인민위원회 산하기관이 특별이주자들은 관리하였는데, 전쟁 직전인 1940-1941년에는 勞動移住와 矯正勞動地帶 運營局(Управление исправительно-трудовых колоний и трудовых поселений ГУЛАГа НКВД СССР)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명칭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전쟁 이전의 시점에 이미 노무부대로 전환될 조직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1941년 7월, 민간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내무인민위원회와는 별개로 존립하던 국가안전인민위원회(НКГБ)가 내무인민위원회(인민위원장 베리야(Л. Берия))로 완전히 통합되게 된다. 즉 보안, 감찰 기능을 담당하던 국가안전인민위원회의 업무가 내무인민위원회로 통합되어 그 조직과 기능이 일원화된 것이다.

특별이주 노동력을 담당했던 기관은 1941-1944년에는 통합된 내무인민위원회 산하 교정노동수용소 및 특별이주국(Отдел трудовых и специальных поселений ГУЛАГа НКВД СССР)이, 그리고 1944-1950년에는 내무인민위원회-내무부의 특별이주국(Отдел спецпоселений НКВД-МВД СССР)이 그 명칭을 달리 하여 존재하였으며, 인적자원을 전시 노무부대의 노동력으로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였다.<sup>24)</sup>

결국 1941-1945년 전쟁기에 민간 노무자를 수용소 체제에 몰아 넣고 산업현장이나 전선에서 勞役을 시킨 부서는 내무인민위원회 산하 교정노동수용소의 노동 및 이주국이였다. 이 부서는 전쟁 발발 이전에 강제적으로 이주, 수감된 기존 인력과 전쟁 중에도 추가적으로 강제동원된 사람들을 도로, 항만, 광산 등지에서 일하도록 하였다. 전시가 되자 동원되었던 이들 특별이주 노무자들은 勞務部隊(трудовая армия)라는 조직으로 편성되어 군사조직의 편제에 귀속되었다.

노무부대(трудармия)는 전시에 등장한 특별조직으로서 노동가능한 남녀 인력을 군대 내의 정치위원부가 군사조직 산하에 편성한 것이다. 초기의 노무부대 창설은 독일계 주민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였다가 전체 주민들에게 확대되었다.<sup>25)</sup> 노무부대는 勞務隊(рабочие отряды), 노무지대(рабочие колонны), 노무대대(рабочие батальоны) 혹은 노무단(рабочие бригады) 등의 세단계의 조직 구조를 갖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면서 군사지원 업무를 수행하거나 군수물품의 생산을 담당하는 산업현장이나 도로건설 등에 투입되었다. 이들은 노무인력을 무기로 후방에서 전쟁을 도운 노무자 부대, 노동군대 혹은 후방의용군들이었다.<sup>26)</sup>

24) 한편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인 1950-1953년에는 내무인민위원회에서 분리독립된 국가안전부의 제9국(9-е Управление МГБ СССР)에서 특별이주자를 담당, 아니 감시하였으며, 1953-1954에는 다시금 내무부(Отдел «Н» МВД СССР)로 소관업무가 이관되는 변화를 겪게되었고 1954년 10월부터는 내무부 제4특별국(4-й Спецотдел МВД СССР)이 特別移住民을 관리하였다. В. Н. Земсков, “Заключенные, спецпоселенцы, осьльнопоселенцы, осельные и высланные(статистико-географический аспект)”, op. cit., pp. 151, 162.

25) 노무부대를 일반적으로 강제동원된 특별이주 노무자들과 구분하는 시각도 있다. 1941년 말에서 1942년 초에 창설된 노무부대는 1942년에 본격적으로 생긴 일반 노무대와 근로대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다 엄격하고 군대 내 정치위원들이 조직동원한 조직이었다고 평가한다. 이에 대해서는 А. А. Герман, А. Н. Курочкин, op. cit., pp. 7~8.

26) Н. Ф. Бугай, “Мобилизовать немцев в рабочие колонны ... И. Сталин”.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1940-е годы), op. cit., p. 8.

전쟁 발발 이전에 일반화된, 강제기구를 이용해 사회 인적자원을 동원하던 정책은 위기가 닥치자 즉각 발동되었다. 소련 국가방위위원회(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Обороны: ГОКО)는 1941년 9월 11일 법령을 준비해 전국에 걸쳐 징집대상 연령층을 총동원시켰다. 내무인민위원회는 1941년 9월 11일 국민 총동원령에 따라 9월 26일 “소련 내무인민위원회 체제하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건설대를 노무대로 재조직하고 병참공급을 중단시키며 그들 전 구성원들을 건설노동자로 삼는다”<sup>27)</sup>라는 극비명령을 발표하였다. 즉 일반 산업현장의 건설대를 군사조직의 성격을 갖는 노무부대로 재정비한 것이다. 노무부대의 초기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941년 말 국경 지역이랄 수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의 독일인과 적군에서 동원해제된 독일인을 중심으로 노동지대를 형성하면서이다. 군복무 의무자들은 단지 전선에만 보내진 것이 아니라 공업생산지나 건설현장 그리고 철도공사 현장 등 일반 산업현장에도 배치되었다.

소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Президиум ВС СССР)는 1941년 12월 26일 군수 산업 현장에 근무하는 육체, 사무 노동자들이 규칙을 어길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결정을 내렸다. 이 규칙은 곧바로 勞務部隊의 일종인 노무지대(рабочие колонны)로 동원된 사람들에게도 확대 적용되었다.<sup>28)</sup> 이러한 와중에 1941년 12월말에는 아스트라한(Астрахан)에서 카자흐스탄 아크몰라주의 쇼르탄진 지구(Шертандинский район Акмо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азахстана)로 400명의 한인이 포함된 1,833명이 이주되었다. 전시 강제 노역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기 시작된 것이다. 이들은 특별부락으로 분산배치되어 그 곳의 러시아인 특별이주자들과 더불어 지내야 했다.<sup>29)</sup>

27) ГАРФ. Ф. Р-9414. Оп. 1. Д. 1157. Л. 5а.

28) 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 Хранения и Изучения Документов Новейшей Истории(러시아현대사문서보관 및 연구센터: 이하 РЦХИДНИ), Ф. 644. Оп. 1. Д. 64. Л. 38.

29) Н. Ф. Бугай, “Выселение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극동으로부터 소비에트 한인 추방)”.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N 5, с. 142.

해가 바뀐 1942년 1-2월, 국가방위위원장 스탈린은 소련과 전쟁을 치르고 있던 적성국 독일의 독일계 소련 시민들을 동원하라고 하였다. 이때부터 노무부대가 대거 양산되기 시작했다. 1942년 1월 10일 국가방위위원회는 “소집연령 17-50세의 독일이주민 활용규칙”이란 법령을 제정하고 2월 14일에는 ‘독일인 동원령’에 따라 노무부대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특별이주자’로 특별 취급되어 khổ役に 시달려야 했다. 이에 따라 내무인민위원회 산하 노무지대로 소련 독일인들이 동원되기 시작하였다.<sup>30)</sup> 이때 독일인 이외에도 루마니아인, 헝가리인, 이탈리아인, 핀계 민족들이 동원되었다.<sup>31)</sup> 계속해서 1942년 10월 14일에, 군복무 의무자로 분류된 35만 명의 주민이 당시 후방지역이었던 중앙아시아나 우랄지역 그리고 남우랄 군관구 등의 노무지대로 동원되었다. 이때 동원된 사람들은 1,000명 단위의 노무부대로 조직되어 공업지대나 건설현장의 작업을 위해 파견되었다.<sup>32)</sup>

## (2) 한인 노무인력 동원

한인들이 동원되어 전선에 근무하게 된 것은 부분적인 경우에 한정되었고 대부분은 이른바 ‘후방의용군’(무기를 소지하여 조국을 방어할 권리를 상실한 사람)처럼 노무부대에 주로 동원되었다. 전쟁기에 韓민족을 적성국 민족으로 비난하고 예방적 조치를 취하게 된 계기는 적성국 일본의 한국내 정치와 무관하지 않았다. 일본 제국은 식민지 한인의 반일운동을 우려하여 일본군에 동원하지 않다가 1932년의 만주사변 이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

30) 독일인 동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비밀문서의 발간과 해제로 많이 알려졌다. Н. Ф. Буга й, “Мобилизовать немцев в рабочие колонны ... И. Сталин”,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1940-е годы), Op. cit., ; А. А. Герман, А. Н. Курочкин, Немцы СССР в “Трудовой армии”(1941-1945)(“노무부대”의 소련 독일인(1941-1945))(M., : Готика, 2000).

31) РЦХИДНИ. Op. cit. Л. 24.

32) Ibid., Л. 37.

다. 그리고는 1942년 말 “20-22세의 한인들 군대에 징집함에 대하여”란 징집명령을 공포하였고, 1944년에 본격적으로 식민지 한인들을 소집하여 전선과 산업현장으로 징집해 갔다. 이 徵集令은 한반도와 만주 등 동원대상자의 현 거주지에 상관없이 한반도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 해당 연령층에 대한 우선적인 동원이 실시되었다.<sup>33)</sup> 이러한 정책이 소련에게는 하나의 전쟁 도발 가능성을 보여주는 안보위협적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1943년 1월 10일 국가방위위원회는 군으로부터 400,000명<sup>34)</sup>의 동원해제에 대한 규정을 채택했다. 그중 20,000명은 한인과 중국인, 불가리아인, 그리스인, 크림 타타르인이었다. 동원 해제된 이들은 건설현장과 일반 기업소, 그리고 벌목작업장에서 편성된 근로대와 노무대에 편입되었다. 노무부대로 한인들을 강제이주, 강제동원시킨 정책이 1943년에 이르자 본격화된 것이다.

한인들은 비록 노무부대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전투현장인 전선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어 근무하지는 않았다. 1940년대 전반부, 특히 1943년 경에 한인들은 주로 노동대대 등에서 근무하였다. 1943년 8월 19일에 작성된 소련 내무인민위원회 제2 운영국의 “소련의 한인 개척지대(Корейская колония в СССР)”란 참고자료에는 한인동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다. 바로 이 자료들은 국가방위위원회가 채택한 극비 법령과 일치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1943년 3, 4분기, 석탄채굴을 도모할 목적으로 국가방위위원회는 소련 내무인민위원회에게 다음과 같은 임무를 부여한다. a) 소련 내무인민위원회 소속의 수용소나 노동개척지역에서는 당해 연도 8월 중 11,000명을 석탄산업 현장으로 이관시킨다. 이들은 2년 이하의 형을 받은 수형자와 수감자 5,000명 그리고 형기가 끝난 후 석탄산업에 귀속된 6,000명의 특별 인원들이다. b) 특별 노동이주자 7,000명을 동원하여 명령에 따라 각 주 석탄산업 부문에 할당된 인원을 배분하여 투입한다.”<sup>35)</sup>

33) ГАРФ. Ф. Р. 9401. Оп. 1. Д. 2011. Л. 264.

34) РЦХИДНИ. Ф. 664. Оп. 64. Л. 24.

이상과 같은 명령에 따라 1943년 3월, 근로대와 석탄산업에 7,765명의 한인 소비에트 시민들이 후송 규칙에 따라 노동지대로 동원되었다. 그 중 5,135명은 모스크바 근교 툴라주(Тульская обл.) 석탄전에서 일했으며, 2,622명은 까자흐스탄 공화국 내, 특히 까라까진스끄 석탄광에 직접 활용되어졌다.<sup>35)</sup> 1943년 12월, 당시 만 17세가 되던 1926년생의 젊은 한인 청년 1,500명이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서 차출되어 꼬미자치공화국의 우흐파에 있는 노무부대(трудова́я армия)로 보내졌다. 이 교정노동수용소(ГУЛАГ)에서는 석유나 가스 채굴 또는 자동차 도로 건설 등의 작업 현장에 배치되었다. 동원되었던 자들 주위에는 완전 무장한 중대 병사들이 “전투(воюющие)” 대열을 지어 질서를 유지하였다. 역사사료가 증명하듯이 노무부대원 대다수는 괴혈병이나 기타 질병에 고생하였다. 심지어는 결혼한 부부조차도 서로 헤어져 도로건설 현장이나 벌목 현장에서 노동해야 했다. 이러한 악조건을 견뎌낸 자들만이 그나마 전쟁이 종식된 후 귀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다시금 특별이주자로 분류되어 거주이전의 제한을 받으면서 그 곳의 통제에 따라야 했다.<sup>37)</sup>

한인들은 강제이주를 당한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전선에 나가려고 애를 썼지만 헛수고였다. 이에 관해서는 소련 내무인민위원회 제2운영국의 참고자료 “소련의 한인 개척시대”에서 읽어볼 수 있다. “우리가 소지하고

35) РЦХИДНИ. Op. cit., Д. 146. Л. 108.; Архив ВС РСФСР(러시아사회주의연방공화국 최고회의 문서보관소) Ф. 22. Оп. 1. Д. 205. Л. 108-170.

36) ГАРФ. Ф. 9401. Оп. 1. Д. 2011. Л. 254; Н. Ф. Бугай, Социальная натурализация и этническая мобилизация(Опыт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사회적 귀소와 종족 동원(러시아한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op. cit., p. 141.

37) ГАРФ. Ф. 9479. Оп. 1. Д. 186. Л. 24; 당시 노역에 참가했던 한 막스의 증언은 다음을 보시오. М. Н. Хаң, “Воспоминания о положении корейцев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 ны(к 50-летию Победы)(대조국전쟁기(승전 50주년에 즈음한) 한인의 상황에 대한 회고)”. Миров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 проблемы объединен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российской-корей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동북아 평화협력과 한반도 통일의 제 문제. 러·한국제학술대회 자료집), 1995, М. с. 94-95.

있는 첩보자료들은 한인 주민들이 정치적, 도덕적으로 만족스런 상태에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애국적 감정들이 고양되어 있음을 확증해 주고 있는 사항들은 바로 “한인 젊은이들이 군사위원회에, 현행 전선에 자발적으로 투입되길 바란다는 소원을 담은 수많은 신청서”들이다. 한편 이들 모든 신청서들은 거부되어 한인 지원자들의 전면적인 불만을 초래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한인 공산주의자들과 청년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실망과 불만이 확산되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은 소비에트 권력이 소수민족인 한인을 소비에트 시민으로 인정치 않고 그들의 법적 권리와 이해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sup>38)</sup>

1937년 이전까지만 해도 한인들이 붉은 군대에서 중견, 고급 지휘요원으로 일하고 있었음은 비밀이 아니었다. 그러나 특별 이주자로 동원하여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 방침은 적성국 민족의 소속 구성원들을 붉은 군대에 잔류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이들 적성국 민족 구성원들은 소련 시민으로서 ‘소비에트 조국’의 동부나 서부 그 어느 전선에서도 손에 총을 잡고 파시스트와 맞서 싸울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 역시 제한받았다. 1940년대 초반 당시 이들 간부들은 모두가 동원해제되어 민간 업무에 종사해야 했으며 점차 숙련된 기능을 상실해 갔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는 시점에서 특별이주된 한인은 여러 지역에 산재되었다. 이들은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각국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꼬미 자치공화국과 까렐-핀 자치공화국 그리고 러시아연방 공화국의 스탈린그라드주, 모스크바주, 툴라주, 이르쿠츠크주, 무르만스크주, 몰로토프주, 스페르들로프주 등으로 집중 분산되었는데 강제동원된 지역별로 그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모스크바 근교의 툴라주의 경우에는, 스쿠라토프 탄광소(Скураатовуголь)의 툴라 석탄건설장(Тулшахгострой)에 406명, 쉬긴 탄광소(Шекинуголь)에 157명, 로고쉬지구 촌락 건설통제소(строительная контора поселка Рогожского рай она)에 116명, 에삐판 탄광소(Елифануголь)에 15

38) GARF. Ф. Р-9401. ОП. 2. Д. 2011. Л. 254, 256. Н. Ф. Бугай, Op. cit., pp. 139~140.

명 그리고 건설통제소(Строй контор)에 116명 등이 풀라 광산건설 트러스트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인원은 점점 증가하여 이미 1945년 4월경에는 844명에 이르렀으며 1945년 제2분기의 경우 1,027명으로 증가되었다.<sup>39)</sup> 한인 수가 급증한 원인은 노동 개척지대와 노무대로 동원될 때 이별했던 가족들이 결합되는 것이 허용된 점과, 붉은 군대 병사들의 동원 해체에 따라 노무부대로 대거 유입된 사태와 관련되었다.

꼬미 자치공화국(Коми АССР) 역시 상당수의 형사범죄 분자들이 처벌받은 후 결집되는 장소로서 운명 지워졌다. 꼬미 자치공화국 내무인민위원 부야노프(Л. Буянов)는 1945년 9월 소련 내무인민위원장 베리아에게 발송한 서한에서, 꼬미 자치공화국에 동원되어 수용소에 갇혀진 독일인, 한인, 불가리아인 등이 13,807명이라고 보고하였다. 꼬미 지역의 수용소 시설에 수감된 특별이주자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자 4,779명, 여자 8,419명, 어린이 6,648명 등 총 19,946명이었다. 이들은 임산업에 11,987명, “꼬미산림” 트러스트에 6,724명, “피초르레스” 트러스트에 4,887명, 농업부문에 5,039명 그리고 기타 기업소에서 2,125명이 분산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었으며 나르콤레치프리트(Наркомрецифлот)에 795명, 키르트란스레스(Киртранслес)에 376명, 삐초라 석탄광에 일부 배치되어 있었다.<sup>40)</sup>

강제 추방과 노역에 시달리게 한 동원정책은 전쟁기 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실시되었다. 이들은 산업현장의 노무대나 건설대속에 특별이주민으로 재배치되어 석탄채굴, 산림벌목 작업과 관련된 임무수행에 계속 투입되었다. 아니 오히려 그 인원과 부여된 업무량은 해마다 증대되어 갔다.

39) ГАРФ. Ф. 9479. Оп. 1. Д. 148. Л. 242.

40) Н. Ф. Бугай, “Конец 30-х-40-е годы. Европейский Север: депортация народов(1930년대 말에서 1940년대까지 유럽 러시아의 북부지역: 체 민족 강제이주)”, Труды института языка, литературы и истории Коми научного Центра Ураль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АН СССР. Вып. 52. 1991. Сыктывкар, с. 88.

### (3) 특별이주자로서의 생활조건

전시 국가의 산업부문에 책임을 지고 있었던 담당 부서와 관청들은 한인 이진 독일인이건 적국에 유리하게 활동할 것이라 추정되는 시민들을 결코 자유로운 상태로 놔두지 않았다. 소련 법무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뿌고프킨(Г. Пуговкин)이 1943년 1월 소련 내무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체르니쇼프(В. Чернышов)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뿔라주 재판기관이 모스크바 근교 석탄전 기업소에서 노동규율을 어긴 사실에 대한 심리를 열었을 때 노동자들이 지켜야할 특별 생활규칙의 내용들이 작업장에서 준수되지 않았음”을 밝혀냈다.<sup>41)</sup> 마침내 1943년 4월 소련 석탄산업인민위원회 인민위원장 바흐르쇼프(В. Бахршев)와 내무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체르니쇼프는 “비밀” 인장하에 “노동자 특별 인원을 석탄산업 인민위원회 콤비나트나 트러스트에서 활용할 운영국 기관에 관한 규정”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는 광산과 같은 산업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인력들을 특별이주자 신분으로 동원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엄격한 통제와 레짐을 정해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석탄산업의 작업을 위해 동원된 독일인, 한인 특별이주자를 생산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석탄 콤비나트에는 노동자 특별이주자 운영국이 구성되며, 트러스트에도 역시 그에 상응하는 부서를 구성”<sup>42)</sup>한다는 조치가 잇달았다.

근로대와 노무대 등의 노무부대로의 유입과 이탈은 1942년 12월 24일 이미 결정되었던 소련 내무인민위원회 훈령과, 1943년 11월 각각의 연방 구성공화국 내지 자치공화국의 내무인민위원회, 각 주, 각 지방주 내무인민위원회의 운영국장들에게 보내진 공한의 지시사항에 따라 규정되었다. 그 규정은 노동동원자들의 작업규칙, 휴가 지급과 봉급 그리고 노동활용

41) ГАРФ. Ф. Р-9479. Оп. 1. Д. 148. Л. 20.

42) ГАРФ. Ibid. Д. 186. Л. 128-129 об.

규칙, 규율, 금전적 벌금의 규모, 친척 면담 규정 등등의 내용을 정해놓고 있었다.

소수민족들을 강제이주시키고 노동현장에 강제로 노동력을 부과시키면서 주민을 통제하는 시스템은 자연스레 형성되어 갔다. 일정한 경험들이 축적되어 가면서 주민을 통제하는 방식들이 더욱 개발되어 독특한 ‘모델’이 형성되었다. 전쟁의 시기 주민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었을 때 전선으로의 동원을 거부하거나 군에서 이탈 또는 수용소나 노무지대에서 도주하는 사례가 늘어났는데 1943년 7월에는 대량 탈주하는 동원된 독일인들을 정밀하게 감시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하였다.<sup>43)</sup> 1944년 3월에 형성된 소련 내 무인민위원회 특별이주국(Отдел спецпоселений НКВД СССР)은 특별이주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종합적인 틀을 완성해 갔다.<sup>44)</sup>

그러나 특별이주자를 담당하는 기관의 운영규칙에는 한인이나 독일인 그리고 기타 다른 특별이주 구성원의 삶의 조건을 편리하게 해 줄 조치들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새로이 구성된 보안기관원들이 동원된 노동자들을 분견대와 중대, 분대 그리고 작업반 등 군대식 조직으로 편성하고 노동현장에 분산배치하며 이를 경계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리고 이들은 동원된 자들에게 “규율화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결코 문화교양 사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특별이주지에서의 출입은 당직시간에만 이루어진다. 작업현장으로 가기 위해 이주지역을 떠날 때와 되돌아올 때 모든 인원의 출입은 작업조나 근무교대 상관의 입회하에 교대시간 전이나 교대 이후의 규정된 시간에만 대오를 지어 이루어진다. 개별적으로 작업현장에 떠날 때에는 작업지대의 상관이 특별 이주지 출입증을 서면상이나 명패 혹

43) ГАРФ. Ibid. Д. 148. Л. 282.

44) 소련 내무인민위원회 특별이주국의 기능은 특별 이주민들의 노동정책과 일상생활 정착에 협력하고, 그들의 정착지에서 특별이주자를 인원 통제와 행정관리를 하는 데 있었다. А. И. Кокуриц, “Спецпереселенцы в СССР в 1944 году или год большого переселения(1944년 혹은 대이주의 해 소련에서의 특별이주자)”. Отечественные архивы(조국의 문서보관서). N 5. 1993. М., с. 102.

은 개별인지상으로 발급한다”<sup>45)</sup>고 되어 있다.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이같은 생활규칙은 특별 이주자들이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건 혹은 어느 민족 구성원이건 간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전쟁 시기는 말할 것도 없고 전후 산업복구를 위해 러시아한인들 역시 러시아 유럽 북부지방과 시베리아 등지에서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어진 사업들을 수행해야 했다. 특히 꼬미 자치 공화국의 우흐따나 까자흐스탄 공화국의 까라간다 지역 등의 광산촌에 있었던 한인 노무지대와 노무대대의 인원들은 계속되어 하달되어 오는 과업을 수행하느라 생고생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현장의 작업상태와 생활조건 등은 모스크바 근교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괴롭고 열악하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이는 추잡한 노동현장에의 인력 배치, 허름한 집조차 부족한 현실, 배급체계의 비조직성 그리고 식품 품귀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

기업소와 같은 생산현장에서도 역시, 동원된 노무자들은 열악한 생활조건에 놓여 있었다. 이들은 우연히 습득한 가건물이나 살기에 적합하지 못한 건물 등 여타 공간 내에 분산 배치되었다. 이들은 비위생적인 조건 속에 방치된 매우 열악한 생활을 견뎌내야 했다. 이들에게는 의료, 위생에 관련된 예방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한인 등을 포함한 여러 민족이 겪은 노무지대와 노무대대와 같은 노무부대에서의 노동은 강압적 성격을 띤 것으로, 결코 생산성 높은 작업을 기대할 수 없었다. 힘겨운 생존 조건과 생산과정의 후진성은 더욱 더 생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노동부역을 수행하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들이 벌어들인 돈은 대개가 노동동원자들의 급양, 작업복, 그리고 신발 등의 기초적 경비에 소비되는 것으로 끝이었다. 질병, 불충분한 식사, 힘겨운 주택사정 역시 노무자들의 건강을 해쳤으며 그들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였다.

45) ГАРФ. Ibid. Д. 147. Л. 224-230.

#### 4. 전후 특별위수사령부의 통제와 한인

전쟁 기간 동안에 산업현장에 동원되었던 한인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것인가란 문제는 전후 기간에도 계속 연장된 주요 사안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45년 9-10월경 바로 모스크바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일부 한인 집단 전원 25명이 강제 이주되었다.<sup>46)</sup> 그러나 인근 모스크바 주의 노무지대와 노무대에서 일하고 있었던 한인들은 계속 그곳에 잔류하여 거주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강제로 추방되지 않고 잔류된 이들 인원에 대한 문제는 이들을 어떤 신분으로 관리해야 할 지, 즉 “그들(한인들)을 특별이주자로서 간주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다.<sup>47)</sup>

결론적으로 말하면 노무부대에서 귀환한 특별이주자들은 전쟁 이후에 있어서도 내무인민위원회 산하의 特別衛戍司令部(Спецкомендатуры НКВД СССР)의 엄격한 규율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사실 강제이주된 러시아 한인의 지위에 관한 규정은 1937년 집단적 강제이주 시기에 생산된 문서상에 ‘행정적으로 소거’된 한인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1937년 10월 내무인민위원장 예조프(Н. Ежов)가 인민위원장 몰로토프(В. М. Молотов)에게 보낸 한인 이주 대책에 관한 종합보고서<sup>48)</sup>에서는 特別移住者(спецпереселенцы)라는 규정을 내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올바르게 실행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특별이주자에 대한 개념상의

46) Ibid. Д. 186. Л. 20.

47) Ibid. Л. 14

48) Н. Ф. Бугай, “Трагические события не должны повториться(к вопросу о положении корейцев в СССР в 30-е годы)(비극적 사건이 더이상 반복되어선 안된다(1930년대 소련 한인의 상태에 대한 문제))”.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российского востоковедения(러시아 동방학의 현실적 제 문제), 1994, М. с. 123.

혼란이 있었는지, 혹은 지방관리들의 사용상의 개별적인 혼동이 있었는지, 아니면 내무인민위원회 담당기관인 特別移住者局 조차도 한인 이주민들을 특별 이주민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지 않았던지 분명하지가 않다. 어쨌든 한인들은 작업현장에서의 이탈이나 타지역으로의 이주 가능성을 항시 내포하고 있었다.<sup>49)</sup>

1945년 1월 마침내 내무인민위원회 특별이주자국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한 개념적 작업을 추진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공화국 그리고 러시아의 톨라주나 기타 한인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에 대하여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특별이주자들을 어떻게 현황파악하고 있는 지를 묻게 되었다.<sup>50)</sup>

1945년 3월 톨라주의 경우 776명의 한인이 있었는데 이들은 특별이주민들이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노동하고 있는 (단순) 이주민들로 파악되고 있었다.<sup>51)</sup> 그러나 소련 내무인민위원회 톨라주 特別移住者課는 한인 노동자 인원에 실질적인 관심을 표명하면서 이들을 특별이주자로 분류해 놓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그들의 활동에 대하여 첩보작전과 같은 관찰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한인이주민을 특별관리할 필요가 있음이 인정되어, 결국 이주 한인들의 지위는 소련 내무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체르니쇼프(В. В. Черньшов)와 내무인민위원회 특별이주자국 국장 꾸즈니쵸프(М. Кузнецов)가 1945년 4월 내무인민위원장 베리야에게 동시에 보낸 건의문에 전적으로 반영되고 거의 확정된다. 이 건의문에는 “모든 한인들을 내무인민위원회 특별명령위수사령부 인원으로 산정하고” 그들에게 소련 인민위원회 “특별이주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여 내무인민위원회 특별이주자국에게 한인들에 대하여 반혁명 범죄조직에 대한 감시와 같은 임무를 부여하자고 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내무인민위원장 베리야는

49) ГАРФ. Оп. cit. Д. 186. Л. 24.

50) Ibid. pp. 1, 3-5, 9, 12.

51) ГАРФ. Ibid. Л. 10-11, 243-246.

1945년 7월 2일 명령을 내려 한인들을 공식적으로 특별이주자로 분류케 하였다.<sup>52)</sup>

더 나아가 내무인민위원회는 한인들이 거주하게 된 지역에서 내무인민위원회 지방국과 내무인민위원회 특별이주국 산하에 6인으로 구성된 특별위 수사령부 분과(Отделения спецкомендатур при местных управлениях НКВД и при Отделе спецпоселений НКВД)를 창설하여 한인들을 특별관리토록 하였다.<sup>53)</sup> 소련 내무인민위원회 특별위 수사령부는 이미 1944년 9월부터 특별이주자들의 거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이 조직은 장교와 상사들을 필두로 내무인민위원회 전투부대 5-7명을 하나의 전투 분과부대로 구성하여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488개소, 키르기즈스탄 공화국에 96개소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 95개소 등에서 강도와 형사 범죄와의 전쟁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었다.<sup>54)</sup> 결국 전후에 있어서도 한인들은 새로 거주하게 된 공화국 내에서의 생활 규율이나 질서를 안보기관들의 통제를 받게 되어 특별이주자 일반에게 적용시켰던 법령과 지시사항 등의 혹독한 조치들을 계속 적용받게 된 것이다.

한인들은 거주이전의 자유도 박탈당한 채 관찰구역을 벗어날 수 없었다. 한인 이주민들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던 旅券 내에는 1937년부터 향후 5년간 그들이 이주해 간 지역에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한계를 엄격히 지워준 표시가 되어 있었다. 이 증명 표시는 기간이 만료되자 다시금 연장되었다.<sup>55)</sup> 1946년 8월 2일 소련 내무부(МВД СССР)의 훈령에 따라 한인들은 새로운 여권을 받게 되었는데, 주거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적 권리를 갖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1947년 3월까지 일부 한인 특별이주자들 역시 주거제

52) Н. Ф. Бугай, “Трагические события не должны повториться...”, *op. cit.*, p. 123.

53) *Ibid.* p. 24.

54) ГАРФ. Ф. 9401. Оп. 2. Д. 86. Л. 76-77; А. И. Кокурин, *op. cit.*, pp. 107~108.

55) Н. Ф. Бугай, “О выселении корейцев из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я(극동변경주에서의 한인 추방에 대하여)”, *op. cit.*, p. 146; “И. Сталин - Л. Берии: Их надо депортировать... (스탈린이 베리아에게: 그들을 강제이주시켜야 한다...)”, (M.,; 1992), c. 22-23.

한이 없는 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귀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강제이주되었던 극동변경주에로 되돌아가 살 수 없었으며 브라트, 몽골 자치공화국이나 치타주에도 역시 거주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제한 규정은 스탈린이 사망한 이후 특별이주자들에 대한 감시와 주거 제한의 범위가 느슨해지고 흐루시초프가 주도한 명예회복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 국가안전인민위원회(НКВД СССР)의 일반원칙에 따라 반혁명 범죄 조직에 대한 감시와 마찬가지로 계속 수행되었다.

## 5. 결 론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소련 정부가 추진한 동원정책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주요한 원동력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그 후유증 역시 만만치 않았다. 소비에트 정부의 동원정책이 갖는 전쟁 이전의 정책형성 과정과 전쟁 시기 그 운영에 있어서의 특징은 강압적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었다. 동원정책은, 인적자원으로서 동원 대상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민족적 소속을 떠나, 모든 주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나, 특히 적성국 민족 구성원에 대한 정책은 보다 엄격했고 전쟁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었다. 따라서 동원의 대상이 되었던 특별이주자들은 자신들이 속한 집단과 유리되었음은 물론이고 가족간의 이별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부모는 자식들을 서로 그리워해야 했으며 심지어 동일한 작업 현장에서조차 남편과 아내는 같이 지낼 수 없는 생이별을 하였음이 여러 증언자에 의해 밝혀졌다.

적성국 내지 부역 민족의 구성원들은 ‘소비에트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시민적 권리를 상실한 채 산업현장에서 노동 인력만을 제공해야 했다. 그리고 이들은 전선으로부터 인접한 지역에서부터 후방이나 산업현장까지 강제

이주 내지 동원되어 특별이주자로 특별 감시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통제 상황은 전쟁이 끝나면서 해소되기는 커녕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특별위수지역으로 선정되어 제한된 생활을 감내해야 했다.

한인을 포함한 다양한 제 민족의 노동력을 노무지대나 노무대대에서 강압적으로 활용한 정책이 과연 집권 정치체제의 지위와 국민과의 상호관계를 강화했을까는 의문이다. 이러한 동원정책이 비록 합법성을 가장하여 행사되었다고는 하나, 국가의 물리적 폭력을 권력의 이름으로 휘두른 정권에 대하여 노무자들의 반목과 반항이 없었을 리는 없다. 비록 이들의 문제제기가 숨막히는 억압속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존재했던 것이고 최악의 작업과 생활조건 속에서 이를 더욱 조장했을 것이다. 이들의 소비에트 체제에 대한 인식의 귀결은 두가지였다. 하나는 억압적 성격을 지닌 행정명령적 사회 통치체제가 파탄으로 끝나게 하든지 아니면 소비에트 정부가 바라던 바의 ‘공산주의 인간형’으로 틀지워져 1957년의 흐루시췌프의 ‘해빙기’나 1985년의 고르바췌프의 페레스트로이카를 기다리던지 두 가지였다. 소비에트 체제에서 탄압의 대상이 되었던 특별이주자들의 염원은 후자로 전개되던 역사의 발걸음 만큼이나 지리했지만 마침내 전자의 목적은 후자, 즉 정부의 명예회복 정책 차원에서 달성되어 갔다.

소련 노무동원정책이 전시에 어떻게 수행되었는 지에 대한 역사는 그 부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과 같은 전쟁에서의 민간 노동력 활용 정책에 일정한 사례를 제시해 준다. 군사조직의 편제에 들어가 노무부대의 노동군으로서 노동력을 무기로 전쟁에 참여한 이들의 공헌은 전쟁수행에 있어서 절반 이상의 성공을 가져다 주었다. 이들 노무자 부대가 후방의용군으로 전쟁에서 보여준 역할과 지위에 대한 더 많은 심층 연구를 기대해 본다.